



# ITU-T IPR Adhoc

TTA 표준화본부 전략기획팀 강 부 미

## 1. 개요

### 가. 회의명 :

ITU-T IPR 애드혹(ITU-T TSB Director's Ad Hoc IPR Group)

### 나. 개최목적

- ITU-T 특허정책 및 가이드라인 개발
- 소프트웨어 저작권 가이드라인 개발
- 상표권 가이드라인 개발
- 기타 이와 관련된 쟁점
- ITU-T/R 회원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ITU 비회원도 TSB 국장의 초청을 얻어 회의/이메일 리플렉터에 참여할 수 있음

### 다. 회의일시 및 장소

2005년 11월 1일(수)- 11월 2일(목), 스위스 제네바 ITU

### 라. 참가자

20여 개 회원국 또는 회사 및 ITU-T 사무국 직원 등 총 30여 명

- Sector Member : Alcatel SEL, Siemens(독일), Nortel Networks(캐나다), IBM, Intel, Lucent Technologies, Microsoft, Mindspeed Technologies, Qualcomm(미국), France Telecom, HP(프랑스), Fujitsu, NTT(일본), Psytechnics(영국) 등
- Member State : 일본, 스위스 등
- 기타 : WIPO, ETSI, ANSI, TTA 등

## 2. 주요 회의 내용

### 가. 주요 문서 및 논의 과정

- 금번 회의는 총 5건의 기고서(ETRI 1건 포함)와 15건의 임시문서(Temporary Document)가 제출됨

- IPR 애드혹은 특허(Patent), 소프트웨어 저작권, 상표권의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최근 소프트웨어저작권 및 상표권 이슈는 안정화되어 대부분의 회의가 특허쟁점에 집중됨

### 나. 특허 관련 쟁점

#### 1) 특허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ITU-T Patent Policy) 검토

- 2005. 3월 회의에서 “공개 표준(Open Standard)” 정의를 위한 검토그룹을 만들고, 이후 이메일 리플렉터를 통하여 확인한 바, 그 결과를 금번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확인함

No.	제목	제출자
C35	Liaison Statement on Proposals to improve ITU-T Archival practice(for action)	IMTC(International Multimedia Telecommunication Consortium)
C36	Proposed resolution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complex IPR cases	NTT(Japan)
C37	IPR Statements and Standards Dynamics	Siemens(Germany)
C38	Proposal for efficient retrieval system of the ITU-T Patent Data Base	Republic of Korea
C39	Proposed Revision of Mark Guidelines(Version 1.0 Approved at March 2005 Meeting)	Editor for Marks Issues



공개표준(Open Standard)은 일반 대중에게 이용가능한 표준으로, 협력과 합의에 의한 절차에 따라 개발(또는 승인)되고 관리되는 표준이다. 공개표준은 서로 다른 재화 또는 서비스간 상호운용성과 데이터 교류를 촉진하고 광범위한 채택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표준의 기타 요소로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 협력 과정(Collaborative process) -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공개된 투명한 합의 도출 과정을 겪은 자발적이고 시장 주도의 개발(또는 승인)
- 합리적인 이해조정(Reasonably balanced) - 위의 과정이 어느 한 이해단체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도록 함
- 적정절차(Due Process) - 이해당사자의 의견에 대한 고려와 적절한 대응
- 지적재산권(IPRs) - 표준 구현에 필수적인 IPRs은 모든 신청자에게 세계적으로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허여되어야 함. 그 조건은 1) 무료 및 기타 합리적인 조건 또는 2) 합리적인 조건(금전적 보상 포함 가능)이며, 그 협상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있고 SDO 밖에서 이루어짐
- 품질 및 상세수준(Quality and level of detail) - 상호운용 가능한 재화 또는 서비스 경쟁적인 구현에 충분하여야 하며,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는 당해 표준을 공표한 SDO이 감추거나 보다 더 통제되지 않음
- 지속적인 지원 - 장기적으로 유지 지원

- 그동안 ITU-T 특허 정책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검토반을 구성하여 작성한 결과를 2005. 11월 버전으로 승인함

## 2) 특허선언서(General Patent declaration form) 양식 검토

- 2005년 3월 개정된 일반특허 선언서 양식에 대한 편집상 변경이 이루어짐
- 기존의 특허선언서 양식 중 특허내용을 기술하는 표에 대하여 '발명자'를 삭제하고, 열을 3열(등록번호·국가, 발명의 명칭·발명자, 상태(등록/출원중))에서 4열(상태(등록/출원중), 출원국, 출원/공개/등록번호, 발명의 명칭)로 변경하는 안 검토
- ITU-R 특허선언서의 통합 DB와 더불어, 차기회의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함

## 3) 복잡한 IPR 케이스 처리

- 일본은 지난 6월 29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표준화와 특허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면서, 이에 따라 ITU-T 회원이 아닌 제3자가 보유한 특허 검색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들 제3자가 보유한 특허 검색은 ITU-T와는 별도의 전문가 그룹이 수행해야 함을 제안(C36)
- 이에 대하여, 실제 ITU 내에서 ITU-T 회원이 아닌 자가 보유한 특허검색 사례 설명이 있었고 현행 특허가이드라인을, 자발적 특허검색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향후 기고서를 받아 수정할 수 있음을 합의함
- 과거 SG8과 SG16에서 관련 회원의 자금지원으로 특허검색 작업이 있었다고 함
-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발적 특허 검색은 ITU-T 외부에서 이루어지되, 관련 ITU-T 기술그룹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도록 하며
- 또한 특허 검색 후의 프로세스는 "해당 SG 및 TSB에 통보 → 필요시 TSB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선언서 제출을 요청 → 제출 거절시는 해당 특허기술을 우회하거나 위험을 안고 표준화 진행"

- 차기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

#### 4) ITU 권고의 변화에 따른 IPR 선언서의 재사용 문제

- 지멘스사(독일, C37)는 IPR 선언서는 제출시점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권고와 특허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고, 특히 권고가 진화(개정?폐지 또는 신규 제정)함에 따라 기존 권고에 포함된 IPR 선언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문제 제기
- 이에 대하여, SG12의 사례 설명이 있었고, 이에 따라 애드혹은 권고 발행 전후 관련 IPR 선언서의 접수일을 주지시키고, 개별적인 접촉은 회원국/회원사에 맡기기로 함
  - ※ SG12는 권고 P.862와 관련하여 일부 필터를 변경하기 위하여 새로운 파라미터를 특정함에 있어서 P.862의 Annex를 만드는 대신에 신규 권고를 제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존 권고와 관련하여 제출된 IPR 선언문 활용이 문제되었는바, SG12는 신규 권고에 대하여 새로운 IPR 선언문 제출을 요청하였음
- 구체적인 IPR 선언서 관리책임자나 방법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
- 다만, IPR 선언을 한 관리자가 IPR 선언을 철회한 경우에는 DB에는 포함시키되, “기업 A는 0000에 철회요청을 하였음”을 나타내기로 함

#### 5) 특허 D/B 검색틀

- 한국(C38)은, 현재 ITU-T 특허 D/B는 파일 전체를 받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가 검색할 방법이 없음을 지적하고, ETSI와 같이 검색 가능 틀의 개발 필요성을 제안함

- 애드혹은 한국의 제안을 지지하였으며, 다만 현재와 같이 파일 전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병행하기로 함

- 장기적인 해결을 위한 대안은 차기 회의에서 TSB가 보고하기로 하였으며, 단기적으로 Microsoft Access, MS word, PDF로 지원하기로 함

#### 6) 기타 사항

- IMTC(International Multimedia Telecommunication Consortium)는 그동안 ITU 문서 관리체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라포치 문서가 SG FTP 사이트에 올라오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일부 SG(예, SG11)는 라포치 문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함(결론은 이루어지지 않음)
- GSC-10의 “Open Standard” 개념에 대한 설명과, 현재 진행중인 WSC(세계표준협력, ITU/ISO/IEC)의 공통 특허정책 개발과 관련하여 Step1/Step2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 Step 1 : 각 표준화기구가 참조할 특허 원칙을 나타내는 공통 선언서 문안 제안
    - 합의사항 : ISO, IEC, ITU는 특허권자로부터 세계적으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하여(ITU의 ‘Royalty-Free’ 정책 포함)한다는 취지의 선언서를 받고, 이를 DB화 하여 제공함. 특허 관련 협상은 이해당사자간에 이루어져야 함.
  - Step 2 : ISO, IEC, ITU 각 표준화기구내에서 Step 1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공통 모델 제안
  - Step 3 : 공통적이고 이상적인 특허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공통 문안 제안
- ITU-R의 특허양식을 ITU-T의 양식에 일치시키기로 하였음(2005. 4.)을 보고



#### 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쟁점

- 특별한 기고가 없었으며, WSIS의 의제인 Open Source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
- 향후 논의사항으로, 라이선스 없이 소프트웨어의 무상 이용, ITU-T 회원간(가능한 경우 ISO/IEC 회원 포함) 협력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ITU-T 회의에서 초청된 전문가의 참여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저작권 통지문제 등을 제시

#### 라. 상표권 관련 쟁점

- 2005년 3월회의에서 논의된 상표권 가이드라인을 Version 1으로 하여, § 3.2(Proper Use References to Marks Owned Outside the ITU)의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하고, 일부 내용의 편집이 이루어졌음

#### 마. 차기회의 및 일정

- 차기회의는 6월 27(화)~28(수) 개최될 예정
- ITU-T TSB 국장은 산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아시아(한국, 일본, 중국)의 IPR 제도 설명 세션을 제안하였으며, 일정은 확정되어 있지 않음 **TTA**